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34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임미애 · 김 윤 · 강준현

정혜경 · 윤종오 · 정춘생

전종덕 · 위성곤 · 차규근

김준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, 의회최소정수는 7인,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정수의 10%로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,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.

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.

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%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

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23조 등).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7인”을 “9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100분의 1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2인 이상 4인 이하로”를 “3인 이상으로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“제189조 및 제190조의2”를 “제189조, 제190조의2 및 제190조의3”으로 한다.

제190조의2의 제목 중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”을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당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”을 각각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”를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”로,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정수에서”를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의석정수에서”로,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을”을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의석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배분이”를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의석배분이”로,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”를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”을 “비례대표시·도의원”으로 한다.

제19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0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의석 및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① 자치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(이하 이 조에서 “의석할당정당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자치구·시·군의원 의석을 배분한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- ②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(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한다)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(整數)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되,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.
- 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의석은 제2항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한다.
- ④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(이하 이 조에서 “추가 의석”이라 한다)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추가 의석을 그대로 보유한다.
-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

있어서 제198조(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)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를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. 다만,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.

⑥ 제187조(대통령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제4항, 제189조(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제4항·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”로, “비례대표국회의원”은 “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”으로 본다.

제194조제2항 중 “제189조 및 제190조의2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”를 “제189조(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, 제190조의2(비례대표시·도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및 제190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석 및

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제190조의2”를 “제190조의2 및 제190조의3”으로 한다.

제197조제7항 중 “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조의2”를 “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90조의2 또는 제190조의3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·제3항, 제26조제2항 및 제19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<br>원정수) ① (생   략)<br>②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<br>정수는 <u>7인</u> 으로 한다.<br>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<br>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<br>정수의 <u>100분의 10</u> 으로 한다.<br>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<br>원정수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 <u>9인</u> -----.<br>③ -----<br>-----<br>-- <u>100분의 30</u> -----.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<br>定) ① (생   략)<br>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<br>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<br>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<br>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<br>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<br>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<u>2<br/>인 이상 4인 이하</u> 로 하며, 그<br>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<br>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<br>·도조례로 정한다.<br>③ · ④ (생   략) | 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<br>定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3인 이상</u> 으로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<br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|
| 第57條(寄託金の 반환 등) ① 관<br>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第57條(寄託金の 반환 등) ① 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.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1. (생략)

2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

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. 다만,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.

제190조의2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

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(이하 이 조에서 “의석할당정당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제189조, 제190조의2 및 제190조의3-----  
-----  
-----.

제190조의2(비례대표시·도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

① 비례대표시·도의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비례대표시·도의원--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,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. The first row has a small dot at its left end, and the last row has a small dot at its right end.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, providing space for writing practice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

--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에--

--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석정수

에서

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. 다만,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(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.

④ 제187조(대통령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제4항, 제189조 제4항·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”로, “비례대표국회의원”은 “비례대표 지방의회의의원”으로 본다.

<신 설>

-----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의석을-----

-----비례대표시·도의원의의석배분이-----

-----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의-----

④ -----

-----비례대표시·도의원-----

제190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의석 및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의원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 ① 자치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

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(이하 이 조에서 “의석할당정당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자치구·시·군의원 의석을 배분한다.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
②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(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한다)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(整數)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, 그 수가 같은 때에는

해당 정당 사이의 추천에 의한  
다.

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  
원의석은 제2항에 따라 의석할  
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  
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  
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획득  
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 
한다.

④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자치  
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제2항  
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  
은 의석(이하 이 조에서 “추가  
의석”이라 한다)을 획득한 경  
우 해당 정당은 추가의석을 그  
대로 보유한다.

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
는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  
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(천재  
·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)의  
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  
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  
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 
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자치  
구·시·군의원의석정수를 곱  
하여 얻은 수의 정수(1 미만의

단수는 1로 본다)를 비례대표  
자치구·시·군의원의석정수에  
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 
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자치구·  
시·군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  
선인을 결정한다. 다만, 비례대  
표자치구·시·군의원의석배분  
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  
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  
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  
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  
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의  
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(1  
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의 의  
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.

⑥ 제187조(대통령당선인의 결  
정·공고·통지)제4항, 제189조  
(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 
과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  
지)제4항·제5항 및 제7항은  
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  
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  
다. 이 경우 “중앙선거관리위원  
회”는 “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 
원회”로, “비례대표국회의원”은  
“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”

第194條(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  
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  
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)

① (생략)

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·공고·통지)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舉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비

으로 본다.

第194條(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  
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  
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89조(비례대표국회의원  
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 
· 공고 · 통지), 제190조의2(비  
례대표시 · 도의회의원당선인의  
결정 · 공고 · 통지) 및 제190조  
의3(자치구 · 시 · 군의회의원의  
석 및 비례대표자치구 · 시 · 군  
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· 공고  
· 통지)-----

— ●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\_\_\_\_\_

례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.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,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7조(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) ① ~ ⑥ (생략)

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<br/>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<br/>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(1<br/>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)를 의<br/>석정수에서 뺀 다음 <u>제189조제<br/>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<br/>조의2의</u> 규정에 따라 의석을<br/>재배분하고, 그 재배분에서 제<br/>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<br/>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<br/>무효로 한다.</p> <p>⑧ · ⑨ (생략)</p> | <p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u>제189조제1항부</u><br/><u>터 제4항까지, 제190조의2 또는</u><br/><u>제190조의3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⑧ · ⑨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